

예산총칙

201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604,406,123 | 18,132,184 |
| 일반회계 | 510,495,098 | 15,314,853 |
| 특별회계 | 93,911,025 | 2,817,331 |
| 공기업특별회계 | 71,588,641 | 2,147,659 |
| 공영개발특별회계 | 21,491,691 | 644,751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0,817,541 | 624,526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29,279,409 | 878,382 |
| 기타특별회계 | 22,322,384 | 669,672 |
| 의료급여특별회계 | 300,697 | 9,021 |
|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| 146,074 | 4,382 |
|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| 295,883 | 8,876 |
|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| 4,634,850 | 139,046 |
| 주차장운영특별회계 | 1,430,258 | 42,908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11,229,195 | 336,876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101,000 | 3,030 |
| 지하수관리특별회계 | 317,546 | 9,526 |
|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| 3,866,881 | 116,006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881,424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(재원구분)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국고보조금(국), 지역발전특별회계(지), 기금(기), 도비보조금(도), 특별교부세사업(특), 시군조정교부금등(조)